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628
----------	------

제안년월일 : 2020년 6월 17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송아량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00제호), 이동현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45호)을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2020.6.17.)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송아량 의원 외 9명과 이동현 의원 외 9명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주체를 관련 법에 따라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자치구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바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주체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관련 규정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관리자”를 “구청장”으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 위배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안 제10조 제2항)

- 나.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자치구에 속하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 보험 가입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의 대상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대상자 및 재정부담의 비율을 정할 수 있음(안 제15조의2)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을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전거 단체보험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단체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재정분담의 비율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p>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p> <p>① (생 략)</p> <p>② <u>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u>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p> <p><u>< 신 설 ></u></p>	<p>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u> ----- ----- ----- ----- ----- ----- ----- -----</p> <p><u>제15조의2(자전거 단체보험 지원)</u></p> <p>① <u>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단체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재정분담의 비율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u></p>